

의안번호	제 호
의견제시연월일	2017. . .

의견청취

구미 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한 의견제시



구 미 시

구미 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한 의견제시

의 번	안 호	
--------	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17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광평오거리는 교통량이 많아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 지정체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동서 방향인 형곡동 ~ 순천향 병원 방향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어
- 광평오거리의 고질적인 교통상태 해소를 위하여 남북방향 고가도로를 설치하고, 사곡오거리에는 교통섬을 설치하는등 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중에 있어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5항에 따라 도로 중 주간선도로(25m이상)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음

2. 주요내용

□ 도로

○ 도로 변경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당초	대로	1	1	35	주간선 도로	4,765	5호광장 광평46-5	임은동 구역계 오태산 105-4	일반 도로	고속 도로	건교고211 (‘70.5.12)	
변경	대로	1	1	35-44. 4	주간선 도로	4,765	5호광장 광평46-5	임은동 구역계 오태산 105-4	일반 도로	고속 도로	건교고211 (‘70.5.12)	일부 폭원 변경
기정	대로	2	1	30~33	주간선 도로	2,360	광2-3 형곡862	대1-1 광평산 29-6	일반 도로	중앙 공원	건교고211 (‘70.5.12)	
변경	대로	2	1	30~33	주간선 도로	2,351	광2-3 형곡862	대1-1 광평 780-15	일반 도로	중앙 공원	건교고211 (‘70.5.12)	종점 변경

○ 도로 변경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대로1-1호선	대로1-1호선	- 일부 폭원 변경 당초 : 35m 변경 : 35 ~ 44.4m - 면적 변경 당초 : 306,884m² 변경 : 313,026m² (증6,142m²)	도로확장 및 교통체계 개선으로 상습정체 해소 및 교통편익을 제 공하고자 일부폭원 확장
대로2-1호선	대로2-1호선	종점 변경 당초 : 대1-1, 광평동 산29-6 변경 : 대1-1, 광평동 780-15	대로1-1호선 일부 확장에 따른 종점변경

□ 완충녹지

○ 완충녹지 변경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적(㎡)	증,감(△)	최초 결정일	비고
기정	3	녹지	완충녹지	고속도로 연변 IC남측	37,985	△91	건교고524 (‘73.12.31)	
변경	3	녹지	완충녹지	고속도로 연변 IC남측	37,894		건교고524 (‘73.12.31)	면적 변경
기정	4	녹지	완충녹지	제1산단(좌측) 고속도로 연변	225,364	△5,887	건교고524 (‘73.12.31)	
변경	4	녹지	완충녹지	제1산단(좌측) 고속도로 연변	219,477		건교고524 (‘73.12.31)	면적 변경

○ 완충녹지 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 설 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3	녹지	- 당초 : 37,985㎡ - 변경 ; 37,894㎡ (감91㎡)	- 도로확장 및 교통체계 개선으로 상습정체 해소 및 교통편익을 제공하고자, 대로1-1 호선 일부폭원 확장으로 인한 녹지면적 변경임
4	녹지	- 당초 : 225,364㎡ - 변경 ; 219,477㎡ (감5,887㎡)	- 도로확장 및 교통체계 개선으로 상습정체 해소 및 교통편익을 제공하고자, 대로1-1 호선 일부폭원 확장으로 인한 녹지면적 변경임

3. 관련법령

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제28조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

- ⑤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4. 주민의견청취

- 열람기간 : 2017.6.30 ~ 7.18.
- 열람장소 : 구미시 도시과, 구미시 도로과
- 방 법 : 일간지 2개, 시 홈페이지 게재, 읍면동게시판 게재
- 제출의견 : 의견없음

5. 사업추진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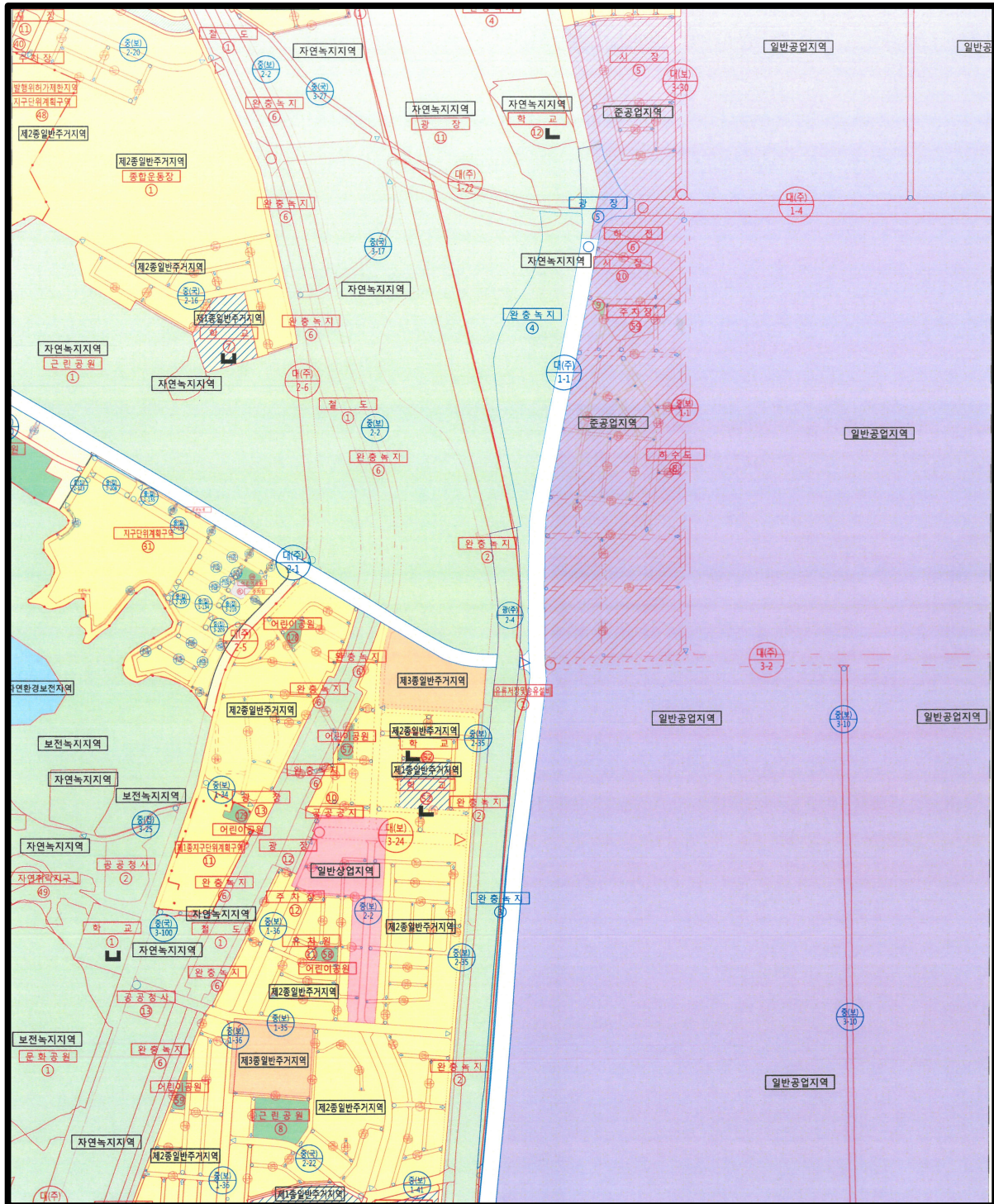
- 추진사항
 - 2016년 07월 05일 : 실시설계 용역 착수
 - 2016년 07월 : 현장조사 실시
 - 2016년 08월 ~ 10월 : 설계현황 보고 및 입체교차로 형식 결정
 - 2016년 11월 : 교량형식 보고 및 결정, 관계기관 협의
 - 2016년 11월 22일 :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제출
 - 2016년 11월 30일 : 지반조사 계획수립 및 굴착허가 승인
 - 2017년 01월 24일 : 설계 경제성 검토(VE) 용역 시행
 - 2017년 02월 28일 : 설계도서 1차 제출
 - 2017년 03월 14일 :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따른 부서 협의
 - 2017년 03월 23일 : 설계 경제성 검토(VE) 워크숍 시행
 - 2017년 03월 27일 :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(2회) 안건 심의
 - 2017년 04월 19일 : 구미시 도시디자인 자문위원회 안건 심의
 - 2017년 06월 01일 :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입안 신청
 - 2017년 06월 29일 :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의견 조치계획 제출

6. 기타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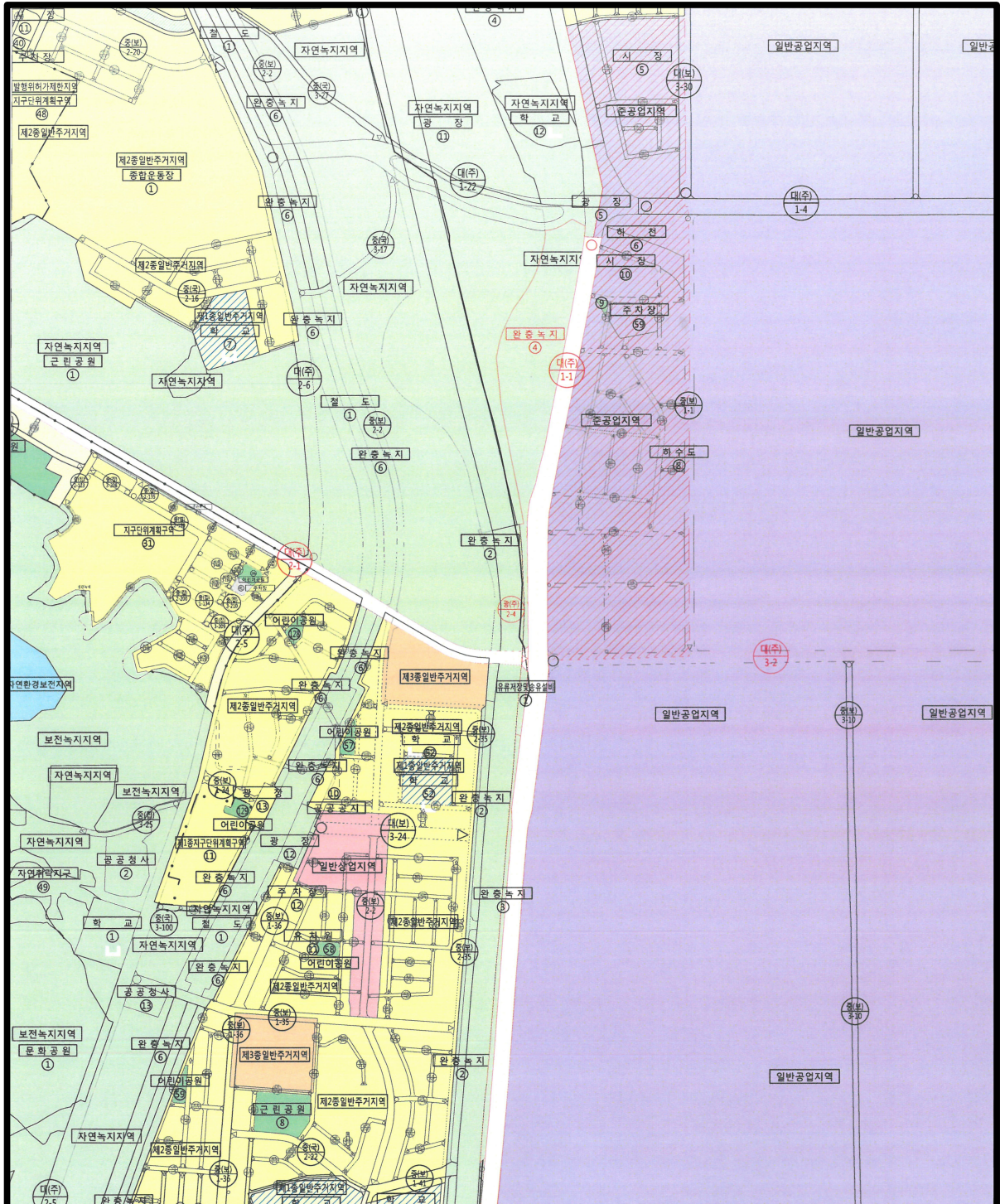
- 첨부 : 광평오거리~순천향병원네거리 개선사업 현황 및 설계 개요

7.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도

□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- 당초



□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도 - 변경



광평오거리~순천향병원네거리 개선사업 현황 및 설계개요

1. 사업 위치도



2. 사업개요

가. 사업목적

- 1) 본 과업은 구미국가산업단지와 인근 주거지역간 상습정체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, 교통체계를 개선
- 2) 산단 근로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

나. 현황

- 1) 광평오거리는 국가산업1단지를 동서로 연계하는 새마을로·1공단로와 구미대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출퇴근 교통량 집중에 따른 상시 교통체증이 높음
- 2) 광평오거리~순천향네거리 사이 공장으로 진입하려는 좌회전(비보호) 차량이 1차선을 점유하여 일시적인 병목현상으로 원활한 차량흐름 방해
- 3) 사곡오거리(교차로 서비스 수준 F) 교통신호 대기차량이 광평오거리에 영향을 미쳐 꼬리물기 현상 등 정체 심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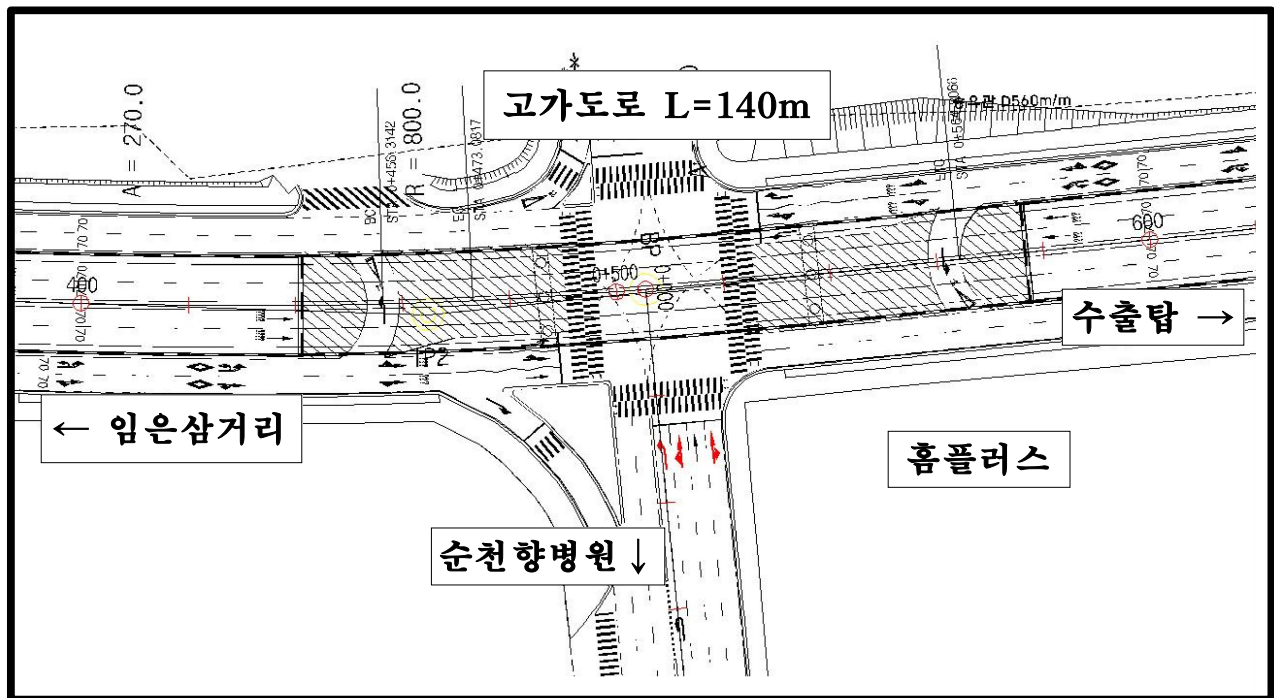
다. 사업구간

- 1) 구미대로 : 광평오거리 교차로 개선
- 2) 1공단로 : 광평오거리 ~ 순천향병원네거리
- 3) 새마을로 : 사곡오거리 신호현시 개선(별도 시행)

라. 사업내용

- 1) 구미대로
 - 광평오거리(교차로 서비스 수준 E) 입체화 교차로 설치(수출탑~임은삼거리)
 - 도로확장 $L=1.04\text{km}$ $B=35\text{m} \Rightarrow B=35 \sim 44\text{m}$
 - 고가도로설치 $L=400\text{m}$ (교량 $L=140\text{m}$, 3경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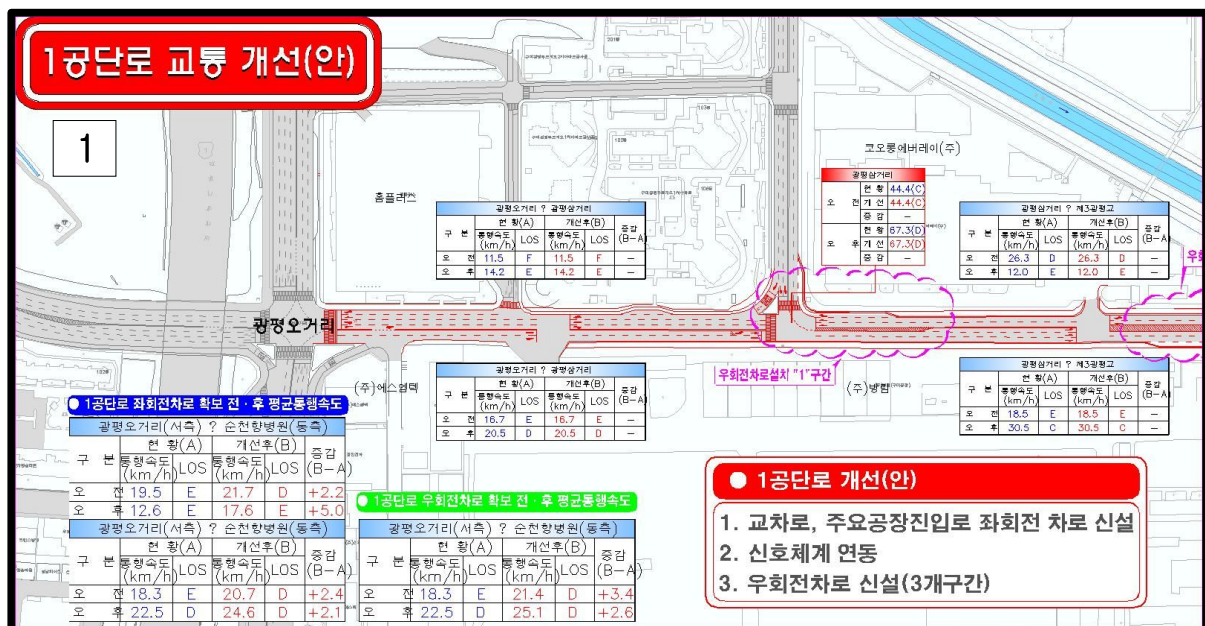
<광평오거리 교차로 개선 계획평면도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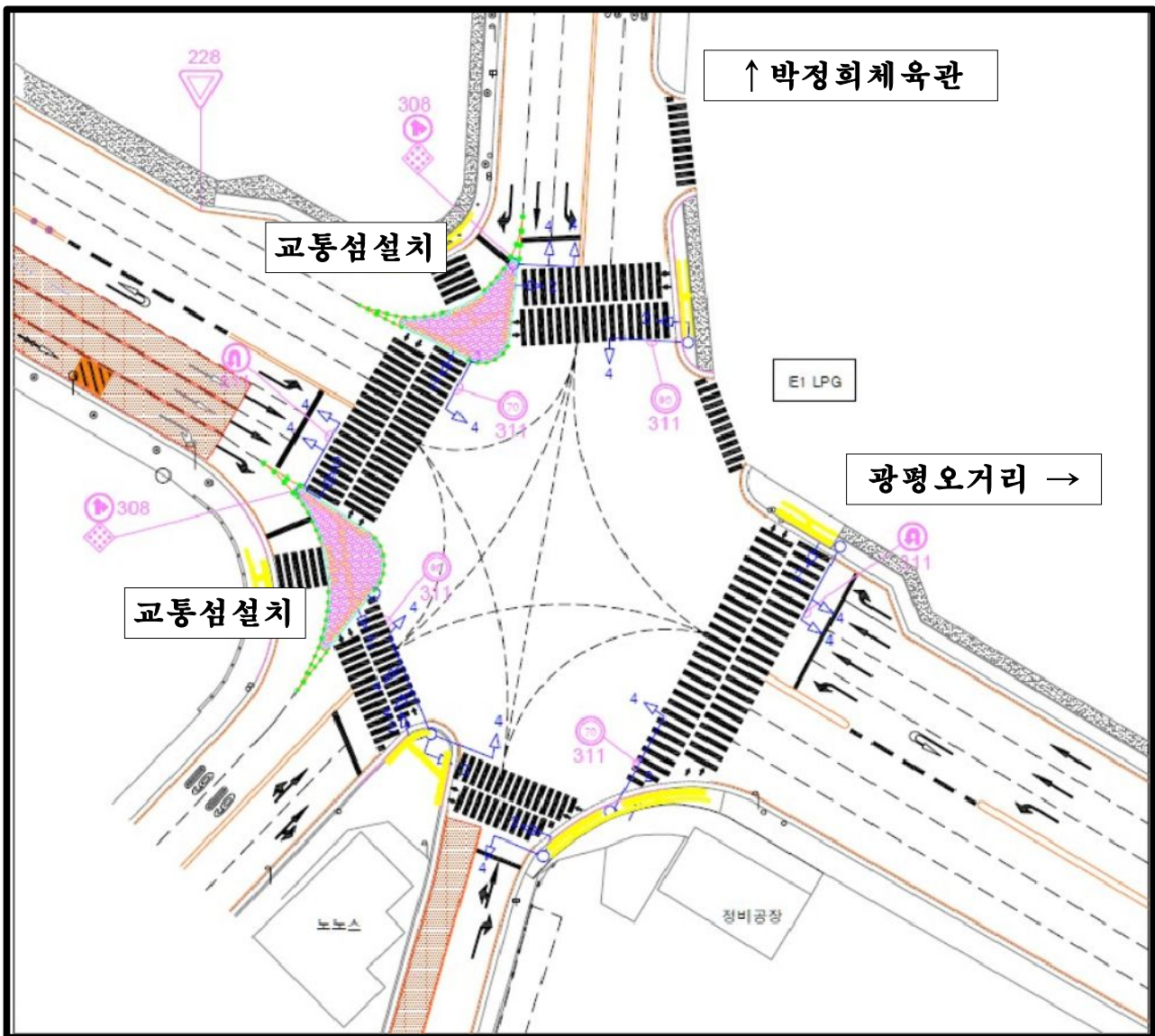
2) 1공단로

- 도시계획도로 범위 내 도로확장 B=23~23.5m ⇒ 25m
- 비일률적인 차선폭 개선 B=3.25m(대로1류 기준에 준한 차선폭 적용)
- 공장으로 진입하는 비보호좌회전 및 우회전 전용차선 설치

<1공단로 교통운영체계 개선 계획평면도>



<사곡오거리 교차로 개선 계획평면도>



3. 설계개요

가. 교차로 별 서비스 수준

<신호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 결과(금요일, 18시~19시)>

구 분	교통량(대/시)	평균제어지체(초/대)	서비스수준
① 수출탑로터리	4,673	22.7	B
② 사곡오거리	4,112	121.9	F
③ 광평오거리	5,202	95.5	E
④ 광평삼거리	3,131	67.3	D
⑤ 제3광평교교차로	2,642	69.2	D
⑥ 명성산업앞교차로	2,467	69.5	D
⑦ 협동정밀앞교차로	2,256	74.1	E
⑧ 계림요업앞교차로	2,308	43.1	C
⑨ 순천향네거리	2,948	59.3	D
⑩ 낙동강변로삼거리	2,143	19.9	B
⑪ 임은1교교차로	3,036	16.9	B
⑫ 임은삼거리	3,589	42.2	C

나. 사업계획 결정 사유

1) 구미대로

- 광평오거리 인근 경부고속도로가 있어 1공단로~새마을로 방향 입체식 교차로 설치가 불가능
- 입체식 교차로 설치로 구미대로 간 신호시간을 1공단로~새마을로 방향으로 배분하여 교차로 지체 감소 효과
- 교차로 서비스 수준 등급 상향(E ~ F ⇒ D ~ E)

2) 1공단로

- 공장진입로에 운영되는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별도 대기공간을 마련하여 직진 차량과 분리(일시적 지체현상 감소)
- 주요 교차로에 우회전 전용차선을 설치하여 직진차량 신호대기열 축소
- 일률적인 차선폭으로 개선하여 운전자의 혼선 예방

3) 새마을로(별도 시행)

- 새마을로 동측 횡단보행 신호시간 확보를 위해 상사서로 직좌 신호시간을 교통량에 비해 많이 배분되어 비효율적인 신호운영 형태 개선(새마을로 동측 보행자 신호를 상사서로 직좌신호에서 박정회로 직좌신호 시 운영)
- 새마을로 서측 보행자 신호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교통섬을 설치하고, 단축된 신호시간을 새마을로 직진 신호로 배분하여 교차로 서비스 수준 향상
- 교차로 서비스 수준 등급 상향(F $\Rightarrow$ E)

